#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## 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인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회의 관련 규정 정비(안 제5조제5항)

- 경미한 심의사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으로 심의하는 규정 신설

나. 회의의 비공표 조항 삭제(안 제9조)

- 상위법에 회의록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 내용 비공표 조항 삭제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1272(2022.3.11.)]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11915(2022.3.11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2. 2. 14. ~ 2022. 3. 7.)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내용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원활한 부동산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